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강명진	870820-*****	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он	보수월액(고지금액)	소득월액([납부금액)
월별 건강보험료①	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108,090	9,190	0	0
02월	108,090	9,190	0	0
03월	108,090	9,190	0	0
04월	139,970	11,910	0	0
05월	139,970	11,910	0	0
06월	139,970	11,910	0	0
07월	139,970	11,910	0	0
08월	139,970	11,910	0	0
09월	139,970	11,910	0	0
10월	139,970	11,910	0	0
11월	139,970	11,910	0	0
12월	139,970	11,910	0	0
연말정산	387,330	28,530		
합계	1,971,330	163,290	0	0
총합계				2,134,620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강명진	870820-*****	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148,500	0
02월	148,500	0
03월	148,500	0
04월	148,500	0
05월	148,500	0
06월	148,500	0
07월	192,330	0
08월	192,330	0
09월	192,330	0
10월	192,330	0
11월	192,330	0
12월	192,33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	0	
실업크i	0	
합계	2,044,980	0
	2,044,980	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 (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강명진	870820-****		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삼성화재해상보험 (주)		애니카다이렉트	트_개인용			
보장성	202-81-45	5***	119V06582	10000	870820-****	강명진	636,560
	삼성화재해상보험 (주)		애니카다이렉트	트_개인용			
보장성	202-81-45	5***	119V065820	00000	870820-*****	강명진	510,280
	현대해상화재보험 (주)		하이카 개인용				
보장성	102-81-32	2***	M2018S81048	3400100	870820-*****	강명진	288,660
	흥국화재해상보험 (주)		흥국화재착한가격건강보험 (1910)				
보장성	102-81-07	7***	41937907240000		870820-*****	강명진	141,917
	인별합계금액			1,577,417			1,577,417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나민아	881227-*****	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(수익자)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		100세청춘보	험1204			
보장성	201-81-45	5***	292120419	9188	881227-*****	나민아	1,190,640
	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		2060건강보험1701				
보장성	201-81-45***		320171095	5226	881227-*****	나민아	360,000
	한화손해보험 (주)		무배당 참 편한 실속암보				
보장성	116-81-46***		LA201928153	125000	881227-*****	나민아	69,750
	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		실손의료비보험[계약전환용]1904				
보장성	201-81-45***		320192441929		881227-*****	나민아	10,55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나민아	881227-*****	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류	사업자반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(수익자)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		우리아이첫보	험1601			
보장성	201-81-45	5***	320160553	3568	160220-*****	강예린	932,070
	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		참좋은치아사랑	보험1804			
보장성	201-81-45	5***	320181479	9201	870820-*****	강명진	720,000
	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		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1803				
보장성	201-81-45	5***	320180349	9325	870820-*****	강명진	1,200,000
	흥국화재해상보험 (주)		흥국화재착한가격건강보험 (1910)				
보장성	102-81-07	7***	41937908720000		881227-*****	나민아	58,795
	인별합계금액		4,541,805				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강명진	870820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7-91-46*	포*****	일반	3,300
7-08-21*	신****	일반	2,400
5-24-22*	<u></u>	일반	5,400
4-02-00*	정****	일반	8,300
3-92-00*	<u>*</u> *****	일반	123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42,4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42,4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6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민아	881227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2-08-11*	메****	일반	8,920
5-14-85*	0 ****	일반	114,600
5-92-09*	하****	일반	617,700
5-90-45*	밝**** *	일반	10,600
5-92-42*	박****	일반	116,300
5-96-09*	참***	일반	156,500
7-38-00*	Of*****	일반	48,300
4-95-03*	박***	일반	7,700
8-14-00*	₩***	일반	17,5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,098,12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,098,12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7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강예린	160220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5-19-12*	행***	일반	107,200
5-27-41*	□ ******	일반	1,537,920
5-92-39*	 *******	일반	10,800
8-07-00*	0 ***	일반	6,200
4-95-03*	박***	일반	10,1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,672,22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,672,22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8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교육비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강예린	160220-****

■ 교육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교육비구분	학교명	사업자번호	구분	지출금액계
보육시설	***보육시설	**5-80-03***	일반교육비	465,000
일반교육비	비 합계금액			465,000
현장학습비	비 합계금액			0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-9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교육비: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강명진	870820-*****

■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내역

(단위:원)

자료제출기관		원리금상환액
상호	사업자번호	(콩제대상큼액)
(재)한국장학재단	**4-82-10***	2,036,218
인별합계금액		2,036,218

- 1. 공제 대상: 학자금대출(등록금 대출에 한정)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(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)
 - ※ 공제대상 학자금대출의 종류
 -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같은 조 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 -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

-10-

-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
- 2. 공제 한도: 한도 없음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강명진	870820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12,247,649	0	153,960	8,900	12,410,509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일반	4,717,077
신용카드	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4,520
신용카드	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도서공연등	8,900
신용카드	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일반	1,509,660
신용카드	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대중교통	7,660
신용카드	202-81-45***	삼성카드주식회사	일반	92,690
신용카드	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1,200
신용카드	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32,980
신용카드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일반	5,927,022
신용카드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108,80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강명진	870820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인별합	계금액			12,410,509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-12-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민아	881227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36,643,818	1,002,600	552,140	21,400	38,219,958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4-86-39***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4,279,210
신용카드	104-86-39***	농협은행 주식회사	전통시장	990,000
신용카드	104-86-39***	농협은행 주식회사	대중교통	112,350
신용카드	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일반	30,729,665
신용카드	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전통시장	12,600
신용카드	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393,730
신용카드	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도서공연등	21,400
신용카드	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일반	1,634,943
신용카드	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대중교통	46,060
인별합계금액				38,219,958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강명진	870820-*****	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1,931,714	0	16,200	2,070	1,949,984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1,931,714
직불카드 등	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도서공연등	2,070
직불카드 등	104-81-83***	주식회사 티머니	대중교통	16,200
인별합계금액				1,949,984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나민아	881227-*****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5,589,110	7,500	0	0	5,596,61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일반	5,530,410
직불카드 등	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전통시장	7,500
직불카드 등	604-81-04***	(주) 부산은행	일반	58,700
인별합계금액				5,596,610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강명진	870820-*****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3,738,130	0	0	0	3,738,130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	종류					
구분	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에
	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385,240	440,760	273,900	267,980	
		161,400	102,400	319,800	498,500	3,738,130
		415,500	310,400	229,850	332,40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나민아	881227-*****		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960,912	0	0	0	960,912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종류					
		01월	02월	03월	04월	고테디사그애
	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65,506	89,175	84,753	79,400	
		59,400	72,100	59,400	75,370	960,912
		66,600	59,060	57,650	192,498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강명진	870820-****		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대출종류 (상품명)	최초차입일 최종상환예정 일	상환 기간	주택 취득일	저당권 설정일	연간합계액	소득공제 대상액
(사업사면오)		차입금	고정금리 차입금	비거치식 상환차입금	당해년 원금상환액		
한국주택금융공사 (104-81-86***)	해당없음 (내집마련 디딤돌 대출)	2015-10-16 2030-10-16	15년	2015-10-16	2015-10-16	1,415,101	1,415,101
(104-01-00****)	대출)	99,000,000	99,000,000	0	0		

- 1. 공제 대상: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(2013.12.31. 이전은 3억원 이하, 2014.1.1.~2018.12.31. 4억원)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※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,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
- 2. 공제한도 :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,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,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, 500만원, 600만원, 1000만원, 1500만원, 1800만원 한도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강명진	870820-*****		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603-82-07337	(사)한국백혈병소 아암협회부산지회	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	10,000	10,000	0
인별합계금액					10,00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19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